

## 근로연령층(18~65세)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상대적 빈곤율 비교

- 2022년 등록장애인은 265만 명이고, 이 중 근로연령층(18~65세)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24만 명임.<sup>1)</sup>
  -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2%, 근로연령층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의 46.6%를 차지함.
-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9.4%(2021년)이며, 근로연령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장애인 가구의 49.7%임.<sup>2)</sup>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장애인 가구는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 인구구조 변화는 가구구성에도 영향을 주어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장애인 1인 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근로연령층 장애인 1인 가구의 비중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하고 있음(2017년 18.8% → 2021년 24.2%).
-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비장애인 가구 소득의 72.7%(2021년,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 기준)이며, 근로연령층 장애인이 있는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85.5% 수준임.
  - 특히 근로연령층 장애인이 취업상태인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비장애인 가구의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취업으로 가구의 노동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돌보던 다른 가구원의 취업기회가 증가했을 개연성도 높음.
-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8.5%(이하 빈곤율)이고, 장애인이 취업상태인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은 20.9%로 나타나, 장애인의 취업이 장애인 가구의 빈곤을 완화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sup>3)</sup>

1) 등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사 판정을 통해 장애유형 및 정도(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를 판정받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추정된 장애인(2022년 3월 기준)은 216만 명으로 등록장애인(2022년 12월 기준) 265만 명의 81.5% 수준임.

2)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결과이며, 동 조사는 가구특성, 가구원의 인적특성, 취업상태여부, 장애인 여부는 조사연도 3월 기준, 소득은 조사연도의 이전연도 연말 기준임. 본고는 소득 정보를 기준으로 보고함.

- 장애인의 취업여부와 장애인 가구의 빈곤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chi^2=151.757$ , P-value<0.001).
- 장애인 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과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공적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국가에서 지급받은 공적이전소득이 장애인 가구의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장애인 취업여부에 따른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단위: %)

	장애인 가구	장애인 가구		근로연령층 장애인 가구	근로연령층 장애인 가구	
		취업상태	취업 이외 상태		취업상태	취업 이외 상태
2017	39.7 (50.1)	23.0	50.0	30.6	17.3	45.6
2018	41.1 (53.0)	25.0	50.6	31.2	15.5	48.3
2019	41.5 (54.4)	24.3	50.3	30.2	15.0	43.8
2020	39.0 (54.0)	20.5	49.3	27.0	12.5	40.3
2021	38.5 (54.7)	20.9	48.6	28.5	15.5	41.5

주: 1)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장애인 여부는 등록장애인 대상이지만 조사응답을 반영하고 있어 등록 장애인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근로연령층 장애인 가구는 근로연령층(18-65세)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3)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가구의 실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 ) 안은 가구의 실질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 장애인의 취업은 장애인 가구의 빈곤 감소에 기여하고, 장애인이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빈곤율은 39.4%(2021년)로 2017년 40.3%에 비해 소폭 개선됨.
- 특히 근로연령층 장애인의 빈곤율은 29.7%이고, 이들 중 취업상태인 장애인의 빈곤율은 15.5%로 큰 차이를 보임.
- 근로연령층 장애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60.9%이고, 이들 중 취업상태인 장애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33.0%로 취업으로 인한 빈곤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3)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에서 설정한 빈곤선(=전체 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아래에 있는 장애인 가구 비중을 의미하며, '장애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설정한 빈곤선(=전체 인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아래에 있는 인구 비중을 의미함. 상대적 빈곤율은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의 소득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에 가구원 수를 반영한 균등화 소득(=가구소득 ÷  $\sqrt{\text{가구원 수}}$ )을 이용함.

〈표 2〉 근로연령층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장애인 상대적 빈곤율

(단위 :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균등화 시장소득		
	근로연령층 장애인	취업상태	취업 이외 상태	근로연령층 장애인	취업상태	취업 이외 상태
2017	31.0(12.0)	17.1	45.5	39.1(12.7)	20.9	58.0
2018	31.6(11.1)	15.5	47.7	40.3(12.1)	19.9	60.4
2019	30.6(10.5)	14.7	43.7	42.1(12.4)	20.6	59.6
2020	27.5(10.1)	12.5	40.2	42.4(13.2)	21.8	59.9
2021	29.7(10.0)	15.5	42.8	41.9(12.7)	23.6	58.7

주 : 1)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장애인 여부는 등록장애인 대상이지만 조사응답을 반영하고 있어 등록 장애인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근로연령층 장애인은 18~65세 장애인이며, 취업상태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 근로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실적급의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외의 무직자, 가사, 학생 등은 취업 이외 상태임.  
 3)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과 균등화 시장소득은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임.  
 4) ( ) 안은 근로연령층 비장애인의 상대적 빈곤율임.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 하지만 장애인의 고용률(34.6%)은 낮아지고 있고,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60.5%, 2021년)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임.

-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고용률과 근로연령층 장애인의 고용률은 2017년 대비 각각 1.9%p, 3.2%p 하락함.
- 장애인의 취업률이 낮은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잘 지키지 않고,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 있음.<sup>4)</sup>

〈표 3〉 장애인의 노동시장 지표

(단위 : 만 명, %)

	2017	2018	2019	2020	2021
15세 이상 장애인	246	250	253	256	257
경활률	38.7	37.0	37.3	37.0	37.3
고용률	36.5	34.5	34.9	34.9	34.6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 연도.

4)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을 일정 비율(2023년 정부부문과 공공기관은 3.6%, 민간기업은 3.1%)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2022년 민간기업과 정부부문(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모두 2.9%로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취업은 장애인 가구의 빈곤 감소에 효과가 있고, 특히 근로연령층 취업상태인 장애인의 탈빈곤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가능한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 18.4%(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주관적인 근로 가능 정도)가 근로 가능하고, 11.1%가 일할 의사가 있으며, 장애인 실업자의 64.1%가 과거 취업경험이 있으나 1년 이상 구직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장애정도와 니즈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일을 할 능력을 키우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그리고 장애인 미취업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가 '돈을 벌지 않으면 가구의 생계가 어려워(2022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라는 응답이 46.6%로 가장 높고, 취업 이외 상태인 장애인의 빈곤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일할 기회는 장애인 빈곤을 감소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11]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